

「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」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- 가. 감리자가 요청 한 경우 시공자.건축주는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
토록 하여 감리자의 하도급 적정성 확인 업무의 내실있는 운영 도모
- 나. 화재 위험이 높은 공종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여 건
축 현장의 화재방지 등 안전성 제고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사감리업무 하도급 적정성 검토(제2장 2.5.1)에서 공사감리자가
시공자에게 하도급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시공자
는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(안 2.5.1 중 4 신설)
 - 나. 공사감리업무 공종관리(제2장 2.5.2 중 4)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
화재위험이 높은 공정(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)의 동시작
업을 금지한다. 다만, 환기 또는 안전장치(유증기 회수 기계장치
등)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
에는 제외한다 중
- 다만, 환기 또는 안전장치(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) 설치로 동시작
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

다만, 벽(개구부가 완전히 닫힌 경우만 해당한다.) 등으로 작업공간이 상호차단 되어 있고, 증기·가스 또는 분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공자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 이후 감리자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동시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고 수정한다

다. 공사감리업무 안전관리(제2장 2.5.6 중 9)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(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)의 동시작업 확인·검토 [환기 또는 안전장치(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)설치 시 동시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] 를 공사감리 공중관리 중 동시작업 금지 규정의 수정사항을 반영(안 제2장 2.5.2 중 4)하여,

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(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)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(동시작업을 허용할 경우, 작업공간의 상호차단 및 적절한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 포함)으로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령안

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 2.5.1 하도급 적정성 검토 중 4.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공사감리자는 1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시공자에게 하도급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제2장 2.5.2 공정관리 중 4의 후단과 제2장 2.5.6 안전관리 중 9의 후단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 2.5.2 공정관리 중 4

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(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)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. 다만, 벽(개구부가 완전히 닫힌 경우만 해당한다.) 등으로 작업공간이 상호차단 되어 있고, 증기·가스 또는 분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공자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 이후 감리자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동시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.

제2장 2.5.6 안전관리 중 9

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(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)의 동시 작업 금지 확인(동시작업을 허용할 경우, 작업공간의 상호 차단 및 적절한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 포함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동시작업에 관한 적용례) 2.5.2 제4호 단서 및 2.5.6 제9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2.5.4 제5호2)에 따라 제출된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리자가 확인·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장 공사감리업무 2.5 공사 단계 2.5.1 하도급 적정성 검토 1.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, 「(계약예규)공사계약일반조건」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건축주에게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한다. 1) 생략 2) 생략 2. 생략 3. 생략 <신설>	제2장 공사감리업무 2.5 공사 단계 2.5.1 하도급 적정성 검토 1.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, 「(계약예규)공사계약일반조건」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건축주에게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한다. 1) 생략 2) 생략 2. 생략 3. 생략 4. <u>공사감리자는 1의 각 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시공자에게 하도급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(신설)</u>

2.5.2 공정관리 1.~3. 생략 4. 동시작업 금지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(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)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. 다만, 환기 또는 안전장치(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)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(삭제)	2.5.2 공정관리 1.~3. 생략(현행 유지) 4. 동시작업 금지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(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)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. <u>다만, 벽(개구부가 완전히 닫힌 경우만 해당한다.) 등으로 작업공간이 상호차단 되어 있고, 증기·가스 또는 분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공자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 이후 감리자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동시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.</u>
2.5.6 안전관리 1.~8. 생략 9.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(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)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·검토[환기 또는 안전장치(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)설치 시 동시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]	2.5.6 안전관리 1.~8. 생략(현행 유지) 9.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(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)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(<u>동시작업을 허용할 경우, 작업공간의 상호차단 및 적절한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 포함</u>)